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03.17. 공포, 2026.09.18.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여 신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제외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변경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나. 전체 조문 내 신에너지 용어 삭제(안 제1조~제30조 개정)

각 조문 내 기존 ‘신·재생에너지’ 용어를 ‘재생에너지’로 개정

다.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조문 삭제(안 제2조 개정)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삭제

라. 신규 공급의무자의 지정요건 및 공급의무량 산정 계산식 개정(안 제18조의3, 제18조의4)

공급의무자 지정 요건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재생에너지 설비 및 수소에너지 설비·연료전지등’으로 개정하고, 공급의무량 산정을 위한 계산식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발전량’으로 개정

마. 국가가 거래·관리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 명확화(안 제18조의7제4항)
국가가 거래·관리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 대상을 명확히하기 위해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로 개정

바. 연료 품질기준을 위한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대상에서 신에너지 삭제
(안 제18조의12)

연료 품질기준을 위한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대상에서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수소’와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합성 가스’를 삭제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5.~6.)

3) 행정규제 : 규제없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를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

생에너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를 “(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를 “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재생에너지센터”로,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8조의3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text{총전력생산량} = \text{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 - (\text{재생에너지 발전량} + \text{「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발전량} + \text{「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나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에서 생산된 발전량})$
--

제18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신·재생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원”으로 한다.

제18조의7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같은 조 제3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발급된”을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으로 한다.

제18조의8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8조의9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8조의12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13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8조의14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8조의15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8조의16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8조의17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8조의18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각각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2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6조의4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6조의5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제2호 및 제5호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2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 경계선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200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내에 기준 호수 이상의 주택법상 주택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주택이 소재하지 않을 것.

나.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 경계선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100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내에 도로법상 도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도로가 위치하지 않을 것.

2.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 경계선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1,000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내에 기준 호수 이상의 주택법상 주택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주택이 소재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이격거리의 하한은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로 한다.

나.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 경계선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1,000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내에 도로법상 도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도로가 위치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이격거리의 하한은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로 한다.

③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 호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되, 최소 5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이나 도로의 범위, 기준 호수 산정방법 및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30조제3항제2호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2) 및 같은 표

제4호3)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제15조제1항제1호 관련)”을 “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제15조제1항제1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 (제18조의4제3항 전단 관련)”을 “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 (제18조의4제3항 전단 관련)”으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 계산식 (제26조의2 관련)”을 “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 계산식 (제26조의2 관련)”으로 하며, 본문 및 계산식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고, 비고 제1호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해당 연도	수송용 연료에 대한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
-------	-------------------------------

비고 제1호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고, 비고 제3호 및 제5호 중 “신·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제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는 이 영 시행 후 법 제11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관련 협약을 맺고 영 제12조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를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 제3조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심의회에 둔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로 본다.

제5조(기술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협약을 맺은 자의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이용 및 그에 따른 기술료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가 해당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종전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설치계획서가 관련 기준을 충족한다는 검토결과를 통보

받아 설치하는 설비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징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공급의무를 이행하는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은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받는 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받는 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15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의무 설비용량을 산정한다.

제11조(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에 따라 설치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아 설치하는 설

비는 제18조의18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1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③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6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⑥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⑧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⑨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가목(가)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로 한다.

⑪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⑫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1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한다.

⑭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별표 2 제10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 다만,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재생에너지설비는 제외한다.

⑮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⑯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⑰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

⑱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제2항제3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⑲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⑳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㉑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3) 본문 중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별표 2 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②②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②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비고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영 또는 다른 규칙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영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및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u> <u>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령</u>	<u>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u> <u>촉진법 시행령</u>
제1조(목적) 이 영은 「 <u>신에너지</u> <u>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u> <u>급 촉진법</u>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재생에너</u> <u>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u> 」 ----- -----.
제2조(<u>석탄을 액화 · 가스화한 에</u> <u>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u>) ① 「 <u>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u> <u>· 이용 · 보급 촉진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 른 <u>석탄을 액화 · 가스화한 에너</u> <u>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u> <u>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말한다.</u> ② ~ ④ (생략)	제2조(<u>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u> <u>하는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u> <u>및 범위</u>) <삭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u>신 · 재생에너지</u>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① (생략)	제3조(<u>재생에너지</u>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① (현 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
에너지”라 한다)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
하려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2항에 따라 계획서를 받았을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신·재생에
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
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의 조화성

2. ~ 4. (생략)

제4조(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
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

② ----- 재생에너지

-----.

③ -----

-----.

1. ----- 재생에너지-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
---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

-----.

②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ten identical rows of horizontal dashed lines, each row consisting of three parallel dashes. The first row is at the top, and the last row is at the bottom, leaving ample space for writing practice. There are no other markings or text on the page.

1. (현행과 같음)
2. 재생에너지 -----

- ### 3. (현행과 같음)

제7조(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①

----- 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② 재 생 에

너 지

제11조(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10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는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생

제11조(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

-----.

1. 재생에너지 -----

2. ----- 재생에너지센터-----
----- 재생에너지-----

3. 재생에너지 -----

--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 ---

----- 재생에너지 -----

-----.

- ② ----- 재생에너지 --

산과정에 이용한 자가 신제품 생산·원가절감 또는 품질 향상의 효과를 얻을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해당 이용자로부터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자가 해당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재

생에너지

제15조(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① -----

재생에너지 -----
-----.

[illegible]

인하여 <u>신·재생에너지</u>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2.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u>신·재생에너지</u>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u>신·재생에너지</u> 설비 설치 의무기관) ①·② (생 략) 제17조(<u>신·재생에너지</u>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u>신·재생에너지</u>	----- <u>재생에너지</u> ----- ----- ----- ----- -----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재생에너지</u> ----- ----- ----- ----- -----. 제16조(<u>재생에너지</u> 설비 설치의무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제17조(<u>재생에너지</u>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 ----- ----- ----- ----- ----- ----- ----- <u>재생에너지</u> -----
---	---

신 설비의 설치계획서(이하 “설
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건축
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8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
치 및 확인 등) ① 설치의무기
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
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
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하
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
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
비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
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한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
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① -----

--- 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

② -----
----- 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

③ -----
----- 재생에너지 -----
----- 재생에너지 -----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8조의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2.·3. (생략)

② (생략)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① 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의무공급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연도별 합계는 공급의무자의 다음 계산식에 따른 총전력생산량에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곱한 발전량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공급량은 법 제12조의7에 따

-----.

제18조의3(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① -----

-----.

1. -----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① -----

-----.

른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총전력생산량 = 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나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에서 생산된 발전
량)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
년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
술 개발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재검토하
여야 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지의 보급 목표 및 그 달성 실
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신·
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
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공급의
무자별 의무공급량은 기후에너
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

총전력생산량 = 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 -
(재생에너지 발전량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
지 설비에서 생산된 발전량 + 「전기사업
법」 제2조제16호나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에서 생산된
발전량)

② -----
---- 재생에너지 -----

-----.

③ -----
----- 재생
에너지 -----

-----.

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및 방법 등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18조의5(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 공급인증서의 거래량 부족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본다.

1.·2. (생략)

--.

④ ----- 재생에너지-----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의5(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 재생에너지-----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2. (현행과 같음)

3. 신·재생에너지원의 종류별
발전 원가

④ (생 략)

제18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① (생
략)

② 법 제12조의7제8항에서 “신
·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된 신·재생에너지 설
비로서 그 설비에 대하여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
원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무상지원금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
지를 공급한 자를 말한다)에 대
해서는 지원받은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되,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
비율에 따라 발급한다.

3. 재생에너지원-----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7(재생에너지 공급인증
서의 발급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재
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

③ -----

--- 재생에너지-----(재생에
너지-----

-----.

④ 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8조의8(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했으나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④ -----
----- 국가에 대
하여 발급된 -----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8(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① -----

----- 재생에너지 -----

-----.

② -----

----- 재생에너지 -----

따른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
로 본다.

③ (생 략)

제18조의9(신·재생에너지의 가
중치) 법 제12조의7제3항 후단
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가중
치는 해당 신·재생에너지에 대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 6. (생 략)

제18조의12(신·재생에너지 연료
의 기준 및 범위) 법 제12조의1
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
조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수소

2.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
에서 얻어지는 합성가스

3. ~ 5. (생 략)

제18조의13(신·재생에너지 품질
검사기관) 법 제12조의12제1항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9(재생에너지의 가중치)

----- 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

1. ~ 6. (현행과 같음)

제18조의12(재생에너지 연료의 기
준 및 범위) -----

-----.

<삭 제>

<삭 제>

3. ~ 5. (현행과 같음)

제18조의13(재생에너지 품질검사
기관) -----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3. (생략)

제18조의14(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법 제12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주차구획(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을 말한다. 다만, 해당 주차장의 운영기간, 교통안전 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은 제외한다.

제18조의15(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 ① 법 제12조의13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 재
생에너지 -----
-----.

1. ~ 3. (현행과 같음)

제18조의14(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

-----.

----- 재
생에너지 -----

-----.

제18조의15(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 ① -----
-----재
생에너지-----

-----재
생에너지

진 설비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는 법 제12조의13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주차장(이하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구획 면적(주차장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구획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10제곱미터당 1킬로와트 이상의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의무 설비용량을 산정하는 경우에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을 반영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또는 다른 법

 --)-----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② -----

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1. -----

----- 재 생에 너 지

2. -----
 -- 재 생 에 너 지 -----

제18조의16(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17(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 -----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월 28일까지 공영주차장의 신·재
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설치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공영주차장 신·재
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
는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검토
한 결과 제18조의15에 따른 설
치 규모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
단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
보 전에 해당 공영주차장 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의 장 또는 대표자의 의견을 들
을 수 있다.

④ (생 략)

제18조의18(공영주차장의 신·재
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 ① 공영주차장 신·재
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8조의17제2
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

② -----

----- 재생에너지 -----

-----.

③ -----

----- 재
생
에너지 -----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18(공영주차장의 재
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 ①
----- 재생에너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직접 설치하는 방법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와 해당 주차장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8조의17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는

----- 재생에너지 -----

----- 재생에너지 -----
----- 재생에너지 -----

----- 재생에너지 -----

----- 재생에너지 -----

-----.

② ----- 재생에너지 -----

----- 재생에너지 -----

----- 재생에너지 -----

-----.

③ -----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9조(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의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의2(보험·공제 가입 등)

①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 재생에너지
지 -----
-----.

④ -----
----- 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

제19조(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의 촉진) -----
----- 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

제20조의2(보험·공제 가입 등)

① -----

-----.

1. · 2. (생략) 3. 설비인증을 받은 <u>신·재생에너지설비</u>의 「제조물책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함으로 인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것일 것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가입대상: 설비인증을 받은 <u>신·재생에너지설비</u> ③ · ④ (생략) 제22조(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발전원(發電源)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신·재생에너지</u> 발전소의 표준공사비, 운전유지비, 투자보수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2. <u>신·재생에너지</u> 발전소의 설비 이용률, 수명 기간, 사고 보수율과 발전소에서의 <u>신·재생에너지</u> 소비율 등의 설계치	1. · 2. (현행과 같음) 3. ----- <u>재생에너지설비</u>----- ----- ----- ----- -----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u>재생에너지 설비</u>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 ----- ----- ----- 1. <u>재생에너지</u> ----- ----- ----- 2. <u>재생에너지</u>----- ----- ----- <u>재생에너지</u> <u>지</u>-----
--	---

및 실적치	-----
3. <u>신·재생에너지</u> 발전사업자의 송전·배전 선로 이용요금	3. <u>재생에너지</u> -----
4. <u>신·재생에너지</u> 발전기술의 상용화 수준 및 시장 보급 여건	4. <u>재생에너지</u> -----
5. 운전 중인 <u>신·재생에너지</u> 발전사업자의 경영 여건 및 운전 실적	5. ----- <u>재생에너지</u> -----
6. 전기요금 및 전력시장에서의 <u>신·재생에너지</u>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력의 거래가격의 수준	6. ----- <u>재생에너지</u> -----
제23조(<u>신·재생에너지</u>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생략)	제23조(<u>재생에너지</u>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현행과 같음)
제24조(<u>신·재생에너지</u>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u>신·재생에너지</u>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품목의 명칭, 규격, 지정 요청 사유 및 기대효과 등을 적은 지정요청서에 대	제24조(<u>재생에너지</u>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 <u>재생에너지</u> -----

상 품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6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로 별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자료제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혼합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

② -----

-----재생에너지-----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

-----재생에너지-----
-----.

제26조의3(자료제출) ① -----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
무 이행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 마. (생략)

2.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
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
합시설 현황

나.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
합시설 변동사항

다.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
합시설의 사용실적

3. 혼합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수송용연료 및 신·재생
에너지 연료 거래실적

나. 신·재생에너지 연료 평
균거래가격

다. (생략)

4. (생략)

② (생략)

제26조의4(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의 산정방법) ① 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연도별

-----.

1. 재생에너지 -----

가. ~ 마. (현행과 같음)

2. 재생에너지 -----

가. 재생에너지 -----

나. 재생에너지 -----

다. 재생에너지 -----

3. -----

가. -----재생

에너지 -----

나. 재생에너지 -----

다.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4(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

혼합의무 불이행분(연도별로 별 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에서 해당 연도에 실제로 혼합한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양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 략)

제26조의5(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 ④ (생 략)

제27조(보급사업의 실시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 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급사업(이하 이 조에서 “보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을 시행하

-----재생에너지-----

-----재생
에너지-----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5(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보급사업의 실시기관) ①

-----재생에너지-----

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시행한다.

1. 2. (생략)

② ③ (생략)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① (생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략)

2.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가능할 것

3. 4. (생략)

5. 집적화단지 조성지역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③ (생략)

<신 설>

-----.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재생에너지 -----

3. 4. (현행과 같음)

5. ----- 재생에너지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법 제27조의3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해당
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2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
경계선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가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20
0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내에
기준 호수 이상의 주택법상 주
택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 정하는 주택이 소재하지 않

을 것.

나.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
경계선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가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10
0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내에
도로법상 도로 등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도로가
위치하지 않을 것.

2.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
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가.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 경
계선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1,000
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내에 기
준 호수 이상의 주택법상 주택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주택이 소재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이격거리의 하한은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로 한다.

제28조의2(신·재생에너지 설비
에 대한 사후관리) ① 법 제30
조의4제1항에서 “신·재생에너

나.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 경
계선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1,000
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내에 도
로법상 도로 등 기후에너지환
경부 장관이 정하는 도로가 위
치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이격
거리의 하한은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로
한다.

③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에 따른 기준 호수는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정하되, 최소 5
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
이나 도로의 범위, 기준 호수
산정방법 및 이격거리의 구체
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산
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
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제28조의2(재생에너지 설비에 대
한 사후관리) ① -----
-----재생에너지 --

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② (생략)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

1. (생략)

2. 법 제12조제2항 및 이 영 제1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 접수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3. (생략)

4. 법 제12조의13 및 이 영 제18조의17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접수·검토, 검토 결과

-----.

② -----

----- 재생에너지 -----
----- 재생에너지 -----
-----.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 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

3. (현행과 같음)

4. -----

재생에너지 -----

통보 및 의견 청취 5. 법 제12조의13 및 이 영 제18조의18제2항·제3항에 따른 <u>신·재생에너지</u> 설비 설치확인신청서의 접수, 검토결과 반영 여부 확인 및 <u>신·재생에너지</u>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u>신·재생에너지</u>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체결 업무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 5. ----- ----- <u>재생에너지</u>----- ----- -----<u>재생에너지</u> ----- ④ ----- ----- ----- <u>재생에너지</u>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연 락 처	044-203-5366